

New Label Rules for Vietnam

# 베트남 신 라벨링 규정

## Writer

이주현  
베트남 호치민무역관

## Contents

- I. 신 라벨링 규정 공표
- II. 신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
- III. 품목별 필수 기재 사항(시행령 내 부록 1)
- IV. 시사점

## I. 신 라벨링 규정 공표

2017년 4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·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‘신 라벨링 규정(Decree 43/2017/ND-CP, 이하 Decree 43)’을 공표했다.

라벨은 제품 정보를 인쇄해 용기에 스티커, 사진 등의 형태로 부착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.

베트남 정부는 제조날짜, 원산지 등 주요 제품정보가 빠진 허술한 라벨지를 모조품 성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,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 라벨링 규정(Decree 43)을 발표했다.

해당 규정은 6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2년간(2019년 6월 1일 이전)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.

또한 이전 라벨링 규정인 ‘Decree 89/2006/ND-CP(이하 Decree 89)’를 대체한다.

## II. 신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

### 1. 적용 대상

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·수입·유통업체 등 관련 단체 및 개인과 규제 당국 모두에 적용된다.

※ KOTRA 글로벌원도우(<http://news.kotra.or.kr/kotranews/index.do>) 자료 제공

**[표 1] 신 라벨링 규정 주요 내용 요약**

신규 법령	Decree 43/2017/ND-CP
대상	베트남 내 생산 및 유통업체, 수입업체, 관련 단체 및 개인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치 : 쉽게 볼 수 있어야 함</li> <li>- 표시 : 분명한 색상 사용</li> <li>- 언어 : 기본 베트남어(일부 예외 존재)</li> <li>- 보조라벨 : 원본 라벨 정보와 일치해야 함</li> <li>- 필수 표시사항 : ①제품명, ②상품 책임자(이름, 주소), ③원산지, ④그 외 부록1에 명시된 세부정보</li> </ul>
발효일	2017년 6월 1일(단, 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2년간 유예기간 적용)
기타	발효일(2017년 6월 1일) 이전에 생산·수입·유통돼 구 규정(Decree 89)에 따른 라벨이 부착된 제품들은 라벨상의 유통기한까지 유통을 허가.

[자료원 : Decree 43/2017/ND-CP]

## 2. 필수 표시 사항

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①제품명, ②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(이름 및 주소), ③원산지 정보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.

상기 3가지 필수정보 외에 제품 종류 및 특징에 따라 해당 라벨링 규정 부록 1에 명시된 기타 세부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.

## 3. 언어

베트남어 작성이 기본이다. 다만 국제 의약품·화학식·약물 성분 등 베트남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은 외국어(알파벳)로 표시가 가능하다.

외국어로 표시될 경우 베트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하

며, 베트남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.

## 4. 글자 크기 및 표시

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(Law on Measurement)에 준해야 한다. 만약 상품이 기포장된 식품, 식품 첨가물, 식품 가공보조제에 해당된다면 라벨 글자 높이가 최소 1.2mm 이상이어야 한다.

## 5. 발효일 및 유예기간

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, 최대 2년간(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) 유예기간을 가진다. 해당 발효일 이전에 생산·수입·유통돼 구 규정(Decree 89)에 따른 라벨이 부착된 제품들은 라

벨상의 유통기한까지 유통을 허가한다.

## 6. 규제 제외 대상

부동산,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물품, 경매 목적 압수 물품, 광물(mineral), 석유·가스, 건축자재(벽돌, 타일, 모래 등), 중고품, 안보 및 국방 관련 제품 등은 해당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.

## Ⅲ. 품목별 필수 기재 사항(시행령 내 부록 1)

해당 규정(Decree 43)에서는 3가지 필수 기입 정보 외에 제품 특징에 따라 상품별 추가 기입 정보를 명시한다. 주요 내용은 [표 2]와 같다.

[표 2] 품목별 필수 기재 사항


범주	필수 정보
식료품	① 수량 ② 제조일 : 날짜-월-연도(dd-mm-yy(yy)) ③ 유효기간 ④ 경고(있을 경우)
건강보호식품	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, 성분의 양 · 영양가치(nutritional value) ⑤ 사용 방법, 보관 방법 ⑥ 위험 경고(있는 경우) ⑦ 라벨링 : '건강보호식품' ⑧ 라벨링 : '해당 상품은 약품이 아니며, 약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'
음료수(주류 제외)	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경고(있을 경우) ⑤ 사용 방법, 보관 방법
식품 첨가물	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함량 ⑤ 사용 방법, 보관 방법 ⑥ 라벨링 : '식품첨가물' ⑦ 경고(있는 경우)
화장품	① 수량 ② 성분 또는 성분량 ③ 로트 번호(Lot number) ④ 제조일 및 유효기간 : 제품 안정성이 30개월 이내일 경우,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. ⑤ 사용 방법 ⑥ 경고
의료기기	① 의료기기 유통번호 혹은 수입라이선스 번호 ② 로트번호 혹은 제품일련번호 ③ 제조일 및 유효기간 : 멸균용 · 일회용 의료기기, 시약(reagent), 보정 물질(calibration substances), 관리 물질(control materials), 화학 물질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. ④ 사용 방법, 보관 방법 ⑤ 보증 조건 ⑥ 경고

[자료원 : Decree 43/2017/ND-CP]

## IV. 시사점

베트남 당국이 수입·유통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을 강화하려는 기본 의도는 모조품 유통을 막고 이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. 라벨지는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, 제품 수출입 및 유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및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 이번 신 라벨링 규정(Decree 43)은 제품별 라벨링 조건 및

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설명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

충분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. 



서적 안내

## 신·식품포장용 필름

「신·식품포장용 필름」-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'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, 플라스틱의 성질, 필름제조법, 필름의 성질,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, 식품보존성,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, 포장과 환경문제,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.

**KOPA**  
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.

(사)한국포장협회

· 가격 : 20,000원  
· 구입 문의

TEL: (02)2026-8655

E-mail : kopac@chollian.net